

특유디자인의 보호방안



김 응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

I. 서설

디자인은 특허법의 보호객체인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수명이 짧다고 할 수 있으며, 도면, 사진 등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은 이와 같은 디자인의 거래 관념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특유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 및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있다. 이하,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한다.

II. 글자체디자인의 보호방안

1. 글자체디자인의 의의 및 취지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제2조제1호의2)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서 글자체를 물품에 포함시켜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있다.(제2조제1호괄호) 종래에는 글자체 개발자는 글자체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쟁업체의 도용 및 모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글자체의 개발의욕을 상실케 하는 바 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여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1)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형상·모양·색채 중 주로 모양(또는 모양과 색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글자체를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글자체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요건 이외에 다음 3가지의 특유의 성립요건을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

(2)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3)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란 개개 글자 꼴들이 지니는 모양·규모·색채·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 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4)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서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한다. 즉, 한글이나 영문자 글자꼴 등이 각각으로 한 벌의 글자꼴을 구성하므로 이는 각각 별개의 디자인권을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3. 출원시 법적취급

(1) 출원서

출원서는 출원서의 일반적인 기재방식을 따라야 한다.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글자체디자인

은 심사등록출원으로 하며,(제9조제6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4의 대분류 N1류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글, 영문자 등을 함께 출원하게 되면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이 될 수 있다.(제11조제1항)

(2) 도면의 작성방법

글자체디자인의 도면은 별지3호의5서식에 의하며,(시행규칙 제5조제4항) 별표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5항) 한글글자체의 경우 등록용 500자, 영문자의 경우 등록용 52자, 숫자의 경우 등록용 10자, 특수기호의 경우 등록용 120자, 한자의 경우 등록용 900자 등의 지정글자 도면과 각각의 글자체의 보기문장, 대표글자 도면을 제출한다.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출원하는 당해 글자체디자인의 종류 및 사용목적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공지된 글자체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된 글자체 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다.

4. 등록요건의 판단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5조제1항본문)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이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도면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이다.

(2) 글자체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판단

시행규칙 별표4의 N1류의 글자체의 물품의 구분 중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상호간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i)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 ii)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iii) 기존 글자체의 자족(패밀리 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심사관은 디자인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3) 신규성(제5조제1항각호)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글자체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CD-ROM 포함)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글자체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공지 등이 된 글자체디자인과 출원된 글자체디자인 간의 신규성 위반 여부 판단은 상기 글자체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판단에 의한다. 따라서, 동일한 글자체를 전제로 양 글자체간 복사나 기계적 복제, 부분적 변경, 자족(패밀리 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규성 위반이 될 수 있다.

(4) 창작성(제5조제2항)

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글자체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주지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글자체디자인은 창작성 위반이 될 수 있다.

(5) 1디자인1출원주의(제11조)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등은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각 출원하여야 한다. 글자체디자인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서 1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는 바 예컨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그리스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또는 ‘한자 글자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글자체”와 같이 기재하면 정당한 물품명이 아닌 바 제11조제2항 위반이다.

5. 등록 후 법적 취급

글자체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제41조) 따라서, 글자체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동일한 글자체를 전제로 양 글자체간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 부분적 변경, 자족(패밀리 글자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다만, i)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ii) i)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제44조제2항) 이는 글자체디자인권의 효력은 글자체의 생산 및 유통행위에만 미치도록 하여 출판, 인쇄 및 통상적인 과정에서 일반수요자가 자유롭게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III. 화상디자인의 보호방안

1. 화상디자인의 의의 및 보호취지

화상디자인이란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등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유체물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게 화상디자인도 창작자의 노력과 자본이 소요되고, 디자인창작자의 창작영역이 무체물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범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 및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이 포함된다. 출원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화상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의 태도

2003년 7월 1일 시행 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의 물품성을 의제한 것은 아니므로, 화상디자인은 단순히 정보화기기에 관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태의 일요소인 “모양”으로 인정될 뿐이다.

4. 출원시 법적 취급

(1) 출원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의 일반적인 기재방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이다.(제9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참고)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상디자인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당해 정보화기기 등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심사 또는 무심사등록출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에 기재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화상디자인에 관한 출원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와 같이 형태에 관한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도면의 작성방법

도면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을 실선으로, 그 이외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경계선을 1점쇄

선으로 도시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한 방법, 1점쇄선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다. 한편, 정보화기기 등과 같은 입체적인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사시도 및 6면도를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화상디자인을 특정한 부분디자인은 출원인의 편의상 정면도를 제외한 나머지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한편,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필수도면(정면도)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에는, ‘비통전시의 상태도’ 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등록요건의 판단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이다.(제9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참고)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무심사등록출원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무심사등록요건을 만족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제26조제2항) 예외적으로 제3자의 정보제공시에는 신규성,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제26조제3항)

6. 등록 후 법적 취급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제41조) 따라서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정보화기기 등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전제로 화상디자인을 포함하는 전체 또는 부분의 동일 또는 유사범위에서 발생한다.

IV.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보호 방안

1.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의의 및 취지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이와 같은 디자인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1디자인1출원주의 원칙상 다물품은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본 규정에 의해 2이상의 물품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통합적 미감 또는 시스템디자인의 보호를 통해 거래사회의 실정에 호응하기 위함이다.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

(1) 2 이상의 물품일 것.

2001년 7월 1일 시행법은 구법에서 “2종”으로 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구성물품이 동종 또는 이종과 상관없이 2이상이면 족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2) 동시에 사용될 것.

2001년 7월 1일 시행법은 구법에서 관습상 한 벌의 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될 것을 요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3)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있을 것.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있는 예는 1)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각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전설이나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등이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의할 것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한 벌 물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5는 총 31종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이 적합할 것. 한 벌

의 구성물품은 심사기준 별표1에서 정하는 한 벌을 구성하는 물품의 적합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하여진 구성물품 이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 물품으로 정하여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한 벌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출원시 법적 취급

(1) 출원서

출원서의 일반적인 기재방식을 따라야 한다.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또는 무심사등록출원인지 여부,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한 벌의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도면의 기재방법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고, 각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요건의 판단

2001년 7월 1일 시행법 이전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한 벌의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 디자인에 대하여도 제5조, 제6조, 제16조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시행법 이후에는 제12조제3항이 삭제됨으로서 일반적인 등록요건 판단시 원칙적으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전체로서만 판단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판단시에는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일부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만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등록 후 법적 취급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각 구성물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에 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는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받침대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V. 결어

현재 다양한 디자인이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고, 새

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러한 산업 전반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더욱 융통성 있는 개정 및 법적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 분야의 창작물을 적시에 보호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디자인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차후 예정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디자인 정의 규정의 제한 요건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발명특허 2009. 12

